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7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시정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 분야 중점 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서울시 총 정원을 18,422명에서 18,472명으로 50명 증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수요 증대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보강(+50명)

(1) 박물관 건립·운영, '32년 하계올림픽 유치, 재난상황관리 감찰기능 강화, 공무원·공공안전관 전담조사팀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 대응(+35명)

(2) 시립대학교 교육·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교수인력 확충(+15명)

나. 서울대공원 사육사 직무의 전문경력관 직위지정에 따라 전문경력관 7명 증원, 일반직 5급 이하 7명 감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3. 14. ~ 3. 18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8,422명”을 “18,47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0,405명”을 “10,437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505명”을 “5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157명”을 “160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 총계의 계란 중 “18,422”를 “18,472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일반직 계의 계란 중 “10,451”을 “10,475”로 한다.

같은 표 5급 이하 소계의 계란 중 “10,049”를 “10,066”으로 하고, 전문경력관 소계의 계란 중 “97”을 “104”로 한다.

같은 표 연구직 계의 계란 중 “376”을 “387”로 하고, 연구사의 계란 중 “314”를 “325”로 한다.

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의 계란 중 “505”를 “520”로 한다.

같은 표 교수 등의 계란 중 “435”를 “450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서울대공원 5급 이하 7명 감축과 전문경력관 7명 증원 조정사항은 해당직위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서울특별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8,42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): 10,405명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505명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: 157명</p> <p>【별표 3】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</p> <p>-----</p> <p>18,472명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10,437명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-----520명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160명</p> <p>【별표 3】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본 청</th> <th>의 회 사무처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18,42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10,45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3</td> <td>1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8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42</td> <td>147</td> <td>16</td> <td>8</td> <td>67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이하 소계</td> <td>10,049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총 계	18,422						정무직 계	2						일반직 계	10,451						1급	7	6	1				2·3급	23	18		1	3	1	3급	18	8		1	9		3·4급	5	5					4급	242	147	16	8	67	4	4·5급	10	10					5급이하 소계	10,049		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계</th> <th>본 청</th> <th>의 회 사무처</th> <th>직속 기관</th> <th>사업소</th> <th>합의제 행정기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총 계</td> <td>18,47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정무직 계</td> <td>2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일반직 계</td> <td>10,47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급</td> <td>7</td> <td>6</td> <td>1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2·3급</td> <td>23</td> <td>1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3급</td> <td>18</td> <td>8</td> <td></td> <td>1</td> <td>9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·4급</td> <td>5</td> <td>5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급</td> <td>242</td> <td>147</td> <td>16</td> <td>8</td> <td>67</td> <td>4</td> </tr> <tr> <td>4·5급</td> <td>10</td> <td>1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5급이하 소계</td> <td>10,066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총 계	18,472						정무직 계	2						일반직 계	10,475						1급	7	6	1				2·3급	23	18		1	3	1	3급	18	8		1	9		3·4급	5	5					4급	242	147	16	8	67	4	4·5급	10	10					5급이하 소계	10,066					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18,42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0,45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3	18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8	8		1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42	147	16	8	67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이하 소계	10,04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계	본 청	의 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총 계	18,47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무직 계	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직 계	10,47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급	7	6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·3급	23	18		1	3	1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급	18	8		1	9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·4급	5	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급	242	147	16	8	67	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·5급	10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급이하 소계	10,06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		
구분	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구분	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 기관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		
전문경력관 소계	97							전문경력관 소계	104						
별정직 계	37							별정직 계	37						
4급상당	5	3	2				4급상당	5	3	2	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		5급상당 이하 소계	32						
연구직 계	376							연구직 계	387						
연구관	62	5		34	23		연구관	62	5		34	23			
연구사	314							연구사	325						
지도직 계	24							지도직 계	24						
소방공무원 계	7,027							소방공무원 계	7,027						
소방준감	5	4		1			소방준감	5	4		1				
소방정	29	2		27			소방정	29	2		27				
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	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	1			1				
소방령 이하 계	6,992							소방령 이하 계	6,992						
교육공무원 계	505							교육공무원 계	520						
총 장	1							총 장	1						
교수 등	435							교수 등	450						
조 교	69							조 교	69						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 용 추 계 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: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8,422명에서 18,472명으로 총 50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
(일반직 +24명, 연구직 +11명, 교육공무원 +15명)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2019년 서울특별시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세입						
	소계(a)						
구분	세출						
	인건비	2,210,469	3,879,755	3,949,590	4,020,683	4,093,055	18,153,553
	소계(b)						
□ 총 비용(a-b)		2,210,469	3,879,755	3,949,590	4,020,683	4,093,055	18,153,553

※ 매년 인건비 상승률 1.8%('19년 기준) 적용 추계

※ 1차년도는 정원 배정시기 고려('19.5.30.)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구분							
국비							
구분	시비						
	지방세수입	2,210,469	3,879,755	3,949,590	4,020,683	4,093,055	18,153,553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 등							
민간							
기타							
합계		2,210,469	3,879,755	3,949,590	4,020,683	4,093,055	18,153,553

5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6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(☎ 2133-6724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정원 변동내역 : +50명

○ 일반직 : +24명

- 5급 +2, 6급 +10, 7급 +10, 8급 △5, 전문경력관 +7

○ 연구직 : +11명

- 연구사 +11

○ 교육공무원 : +15명

- 교수 등 : +15명

2. 비용소요 추계 : 3,811,154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소요비용	세 부 내 역	비 고
합 계	+3,811,154	◆ 총 계 : +3,811,154	'19년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
		○ 일반직(+24명) : +2,011,191	
		▷ 5급(+2) : 103,029 × 2명 = 206,058	
		▷ 6급(+10) : 84,897 × 10명 = 848,970	
		▷ 7급(+10) : 72,270 × 10명 = 722,700	
		▷ 8급(△5) : 54,157 × △5명 = △270,785	
		▷ 나군(+1) : 84,206 × 1명 = 84,206	
		▷ 다군(+6) : 70,007 × 6명 = 420,042	
		○ 연구직(+11명) : +832,073	
		▷ 연구사(+11) : 75,643 × 11명 = 832,073	
○ 교육공무원(+15명) : +967,890			
▷ 조교수 (+15) : 64,526 × 15명 = 967,890			